

마이크로전공 소개 자료

1. 목적

- 가. 수요에 맞춰 학생에게 다양한 전공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전공 이수율 확대
- 나. 학생들이 관심 있는 전공의 세부 분야를 최소 부담으로 경험·이수토록 지원

2. 마이크로전공 정의

주전공 및 복수(부)전공 외에 타 학과(전공)의 과목을 일정한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학위증에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.

3. 마이크로전공의 특징

구분	단일 학과(전공)	학과(전공) 및 융합전공 간	단일 융합전공												
학위 여부	복수전공, 연계전공, 융합전공과는 다르게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, 부전공과 같이 학위증에 마이크로전공 이수 표기(인증)														
교육과정(공통)	12학점 이상 18학점 이내 편성														
교과목 편성 기준	-	각 학과 간 9학점 이내	융합교과목 6학점 이상												
신설신청	융합교육지원센터에 운영신청서 제출(수시)														
전공명칭	학과(전공) 교육과정의 세부 분야를 명칭으로 지정하되 학과명 및 학위명과 다르게 지정														
이수기준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전공선택</th><th>전공필수</th></tr><tr><td>복수전공</td><td>36학점 이상(교과목 지정×)</td><td></td></tr><tr><td>부전공</td><td>21학점 이상(교과목 지정×)</td><td></td></tr><tr><td>마이크로전공</td><td>12학점 이상(교과목 지정○)</td><td></td></tr></table>		구분	전공선택	전공필수	복수전공	36학점 이상(교과목 지정×)		부전공	21학점 이상(교과목 지정×)		마이크로전공	12학점 이상(교과목 지정○)		[표1] 참조
구분	전공선택	전공필수													
복수전공	36학점 이상(교과목 지정×)														
부전공	21학점 이상(교과목 지정×)														
마이크로전공	12학점 이상(교과목 지정○)														
신청자격(학생)	복수(부)전공과 같이 신(편)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														
기타사항	다수의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, 2개 이상의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한 경우, 주전공 심화과정 이수 면제														
	마이크로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주전공 및 복수(부)전공의 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음														

[표1] 단일 융합전공의 마이크로전공 이수 기준

구분	총 이수학점	주전공 중복인정 학점	융합교과목 이수학점 ①	참여전공 이수학점 ②	선택 이수학점 (① or ②)
복수전공	36학점	12학점 이내	12학점 이상	9학점 이상	3학점
부전공	21학점	6학점 이내	9학점 이상	3학점 이상	3학점
마이크로전공	12학점		6학점 이상	-	-

전주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체계

〈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〉

1. 교육과정 체계

-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 구분에 따른 주전공, 복수(부)전공 이수 가능 여부

개설학과(전공) 이수구분	일반	연계	융합	마이크로
주전공 (학위)	○		○	
복수전공 (학위)	○	○	○	
부전공	○		○	
마이크로전공	개설 시		○	○

2. 교육과정 이수 기준

- 졸업 필요 학점: 130학점(간호학과 140학점, 5년제 건축학과 163학점, 미래융합대학 120학점)
- 졸업학점 내 필수 교육과정 및 이수 기준



3. 트랙(안) _ 추후 논의

- 마이크로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주전공 및 복수(부)전공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마이크로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
- 마이크로전공을 개설한 학과(전공)는 ‘트랙’을 개설할 수 있으며, 트랙 개설 시에는 주전공 및 복수(부)전공의 교과목을 트랙으로 인정하여 학위증에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

다전공 운영규정

(제정 2017. 9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「학칙」 제4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라 다전공의 이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복수전공이란 주전공이 외에 타 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학과(전공)의 학위를 복수로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1.8.20.>
2. 부전공이란 주전공이 외에 타 학과(전공)의 과목을 일정한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학위증에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1.8.20.>
3.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,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자기설계연계전공을 포함한다.
4. 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, 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융합전공을 포함한다. <개정 2019.2.18., 2021.8.20.>
5. **마이크로전공이란 주전공 및 복수(부)전공 외에 타 학과(전공)의 과목을 일정한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학위증에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.** <신설 2021.8.20.>

제3조(세부사항) 본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다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교육과정편람」으로 정한다.

제5장 융합전공

제24조(전공개설 및 폐지) ① 융합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과(전공)는 융합전공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참여교원은 신청학과(전공) 소속의 전체 또는 일부 교원으로 할 수 있다.

② 융합전공의 신설 및 주전공으로 인정하는 융합전공의 승인은 융합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9.12.10.>

③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융합전공의 폐지를 희망하거나 융합전공 개설 후 4학기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최근 2학기 동안의 이수인원이 평균 10명 미만인 경우 융합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10.>

④ 융합전공에 주임교수를 둔다.

⑤ 본교에 개설된 융합전공은 [별표 2]와 같다. <신설 2017.12.20.>

제25조(교육과정) 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.

1.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<개정 2020.9.1.>
2. 15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융합교과목. 다만, 주전공으로 인정한 융합전공의 경우 18학점 이내에서

신설 <개정 2019.12.20., 2020.9.1.>

3. 그 밖의 학과(전공)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과목

② 교육과정은 이수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45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며, 필요에 따라 전공필수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전공으로 인정하는 융합전공의 경우 60학점 이상으로 편성한다. <개정 2019.12.20.>

③ 신설하는 융합과목의 3분의 1 이상은 관련분야 산업체전문가가 강의를 담당하거나 팀티칭을 하고, iClass 및 PBL 등의 방법으로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8.9.1.>

④ 융합전공 과목은 정규학기의 야간 또는 계절학기에 개설할 수 있으며, 집중이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절수업 규정을 따른다. <개정 2018.9.1.>

제26조(신청자격) 융합전공의 신청자격은 신(편)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하며, 융합전공의 주전공 신청은 재학 중 1회로 한정한다. <개정 2019.12.20.>

제27조(신청절차 등) ① 융합전공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융합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2.1.>

② 학과(전공)별 융합전공 이수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시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인원, 제한사유, 전형방법 등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8조(이수 및 포기) ① 융합전공은 복수전공, 부전공 또는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,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0., 2018.2.1., 2019.12.20.>

1.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가.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12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

나. 신설 융합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

다. 참여전공 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

라.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

2.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가.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

나. 신설 융합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

다.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

라.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

3. 융합전공을 마이크로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신설 융합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8.20.>

4.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12.20.> <개정 2021.8.20.>

가. 신설 융합교과목 15학점 이상 이수

나. 참여전공 교과목 42학점 이상 이수

다.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

② 융합전공의 이수 여부는 주관학과에서 졸업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. <개정 2018.9.1.>

③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또는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④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융합전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0., 2018.2.1.>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29조(학위수여) ①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하고 주전공(제1전공)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전공(제1전공) 및 융합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.

②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신청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수여한다.

[본조개정 2019.12.20.]

제30조(산학융합전공) ① 산학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융합전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,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9.2.18.>

1. 산학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한다. <개정 2019.2.18.>

가. 융합전공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

나. 21학점 이내에서 신설하는 융합교과목

다. 그 밖의 학과(전공) 및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교과목

2. 산학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의 전공이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 <개정 2019.2.18.>

가. 주전공 이수 교과목에 대해 9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

나. 신설 융합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

다. 참여전공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

라. 그 밖에 신설 융합교과목 또는 참여전공 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

② 산학융합전공은 이수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, 교육과정 편성, 전형 및 선발 등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2.18.>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6장 마이크로 전공

제31조(전공개설 및 운영) ① 마이크로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과(전공)는 마이크로전공 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마이크로전공의 신설은 융합교육운영위원회의 및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③ 마이크로전공에 주임교수를 두며, 주임교수는 주관학과의 학과장(전공주임)이 된다.

제32조(교육과정) ① 교육과정은 단일 학과(전공) 또는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.

② 교육과정은 12학점 이상 18학점 이내로 편성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가 참여할 경우 각 학과(전공)의 교과목은 최대 9학점으로 한다.

제33조(신청자격) 마이크로전공의 신청자격은 신(편)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. 다만, 예체능 계열 학과는 실기 및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정하여 이수를 허용할 수 있다.

제34조(신청절차 등) ①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마이크로전공별 이수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시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인원, 제한사유, 전형방법 등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5조(수강지도)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 및 진로 지도는 마이크로전공의 주임교수가 담당한다.

제36조(이수 및 포기) ① 마이크로전공은 교육과정편람에서 정한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수한 교과목 중 주전공 및 복수(부)전공의 교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② 마이크로전공의 이수 여부는 주관 학과(전공)에서 졸업사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.

③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마이크로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.

④ 마이크로전공 이수자가 마이크로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학생포털시스템에서 마이크로전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37조(실험실비) 실험실습 또는 기자재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마이크로전공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험실습비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[본장신설 2021.8.20.]